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793호
2. 발 의 자 : 최유희 의원 등 67명
3. 발의일자 : 2023. 5. 26.
4. 회부일자 : 2023. 6. 5.

II. 주문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이사장·사무국장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함.
 - 가. 이사장 임명 절차 및 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나. 사무국장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

I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자본잠식으로 인한 기금 고갈의 우려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사장 임명 및 사무국장 채용을 진행하였음.

- 제6기 공제회 임원 구성 계획안에 따르면 15인의 이사 중 8인을 공제 가입자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계획안과 다르게 추천 요청은 7인에게만 의뢰하여 이사 1인이 부족한 상태로 구성함
-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공제가입자에게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공제가입자 중 1인이 교육감의 수행비서 출신 측근을 추천하는 임원 추천서를 발송하였고, 추천자가 작성해야 할 추천서를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셀프 추천을 시도한 정황도 있음.
- 사무국장 채용의 경우 인사규정상 공개채용이 원칙이나 교육감 2인 추천 후 1인이 미응시하는 형태의 특별채용으로 진행된 적도 있으며, 공제회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짧은 기간 공고하고 삭제하여 지원자를 줄이거나 심사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진행한 의혹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부적절한 인사로 인한 기관 부실 가속화 및 서울시민·학생의 추가적 피해를 막고, 채용 비리 근절 및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2. 이송처 : 감사원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감사청구안은 2023년 5월 26일 최유희 의원 등 67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793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감사청구안은 서울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서울특별시학교 안전공제회(이하 ‘안전공제회’)의 이사장 임명 및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관계 규정 및 채용 절차의 위반 소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채용비리 근절 및 기관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사안 개요에 대한 설명

- 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의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1987년 설립된 서울학교안전공제회를 모태로 2007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 기관은 「학교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이사장과 임원을 임명하는 법인으로서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안전공제기금은 공제료의 대폭 인상에도 학생 수 감소와 공제범위 확대 등에 따른 고갈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안전공제회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학교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임직원 역량의 고도화·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18~'22년) 학생 1인당 공제료가 42.9%나 상승했음에도 관내 학생 수가 매년 2~3만명 수준에서 감소하여 기금잔액이 늘거나 줄지 않는 정체 상태에 있는바, 공제기금과 현행 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 1인당 공제료)¹⁾

(단위 : 원)

회계연도	유	초	중	고	평균
2022	2,940	4,510	9,550	12,700	7,425
2021	2,530	4,400	9,350	11,550	6,958
2020	2,530	4,400	9,350	11,550	6,958
2019	2,250	3,990	7,980	9,870	6,023
2018	1,950	3,390	6,890	8,550	5,195

[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수입 및 학생수 증감 현황²⁾

(단위 : 백만원, %, 명)

연도	당해연도 수입(A)		당해연도 공제료 수입(B)			학생수(산출내역 기준)		공제료 단가 평균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	구성비(B/A)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		
2022	7,356	285	6,802	92.5	192	895,077	△22,435	7,425	467
2021	7,071	△194	6,610	93.5	△154	917,512	△23,465	6,958	0
2020	7,265	656	6,764	93.1	688	940,977	△29,909	6,958	936
2019	6,608	739	6,075	91.9	557	970,886	△36,821	6,023	828
2018	5,869	△2,097	5,518	94.0	△258	1,007,707	△38,004	5,195	30

○ 그러나 정작 학교안전공제회의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바, 2015년 이후 시행된 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2023년 1월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채용 규정이나 채용계획의 위반이 지적되었고, 안전공제회의 핵심 직위가 교육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³⁾

1)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1384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기획조정팀-208, 2013.6.15.)

2) 위와 같음.

3)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3.10.), 제31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전문성이 없는 서울시교육청 출신 공무원을 이사장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기수립된 임원 선임계획을 무시하였고,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서도 「인사규정」 제16조에⁴⁾ 규정된 공개채용 원칙을 고의로 회피하고자 채용공고를 단기간만 게시하고, 외부 면접 위원을 교육청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해당 주장에 관하여 채용계획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선,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8월 2일 제6기 임원 구성 계획(안)을 확정하고,⁵⁾ 8월 17일과 18일 양 일간 법과 정관에 따라 규정된 추천대상자에게⁶⁾ 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⁷⁾ 8월 23일까지 임원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⁸⁾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근거하여 2022년 9월 1일 2명의 감사와 14인의 이사를 임명함으로써 제6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⁹⁾ 11월 1일 교육 행정국장을 임시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임원 구성 계획(안)에서 각급 학교장회 추천자 8명을 포함한

(2023.3.3.), 제31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2023.2.24.) 등

4)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인사규정 제16조(임용방법 등) ①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그에 따른 신규 채용의 공고, 원서접수 및 전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5) 제6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임원 구성 계획(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6273, 2022.8.2.)

6) 「학교안전법」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② 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제6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임원 추천 의뢰(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7002, 2023.8.17.;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7052, 2022.8.18.;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7053, 2022.8.18. 등) 및 제6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임원(감사) 추천 의뢰(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7054, 2022.8.18.)

8) 제6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임원 추천(서울솔가람유치원-5377, 2022.8.23.; 서울대림초등학교-8607, 2022.8.19.; 화랑초등학교-8660, 2022.8.23. 등)

9) 제6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임원 임명(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8143, 2022.9.1.)

17명의 임원으로 제6기 임원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이하며, 「정관」 제6조에¹⁰⁾ 따른 임원 정원 대비 1명 적게 임원을 선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월 17일 공석으로 남아있는 임원 1명에 대해 돌연히 공제가입자 대표(한국초등교장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¹¹⁾ 이를 수용했고, 1월 25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이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¹²⁾

특히, 동 이사장의 이사 임명 과정에 있어 2023년 1월 공제가입자 대표가 발송한 추천서의 일부 내용이 후보자의 자필로 작성되었다는 측면에서¹³⁾ 추천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도 확인되었습니다.

- 더욱이 2023년 1월 임명된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의회 등 간의 협력과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수감 업무를 지원하는 5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근무했을 뿐, 학생 안전이나 기금운용 등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¹⁴⁾

- 다음으로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하여 안전공제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2013년과 2015년, 2017년 사무국장 채용에서는 예외 조항을¹⁵⁾ 적용한 특별채용 방식으로 서울시교육청 출신 퇴직공무원을 채용

10) 「정관」 제6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1) 제6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임원 추천(서울대림초등학교-488, 2023.1.17.)

12) 제6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임원 임면(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619, 2023.1.25.)

13) 제39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청원 및 감사청구안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4289, 2023.6.8.)

14)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3.10.), 제31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2023.2.24.) 등

15)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인사규정 제16조(임용방법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특수 직무분야의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한 전문가 또는 특수한 경력이 요구되는 자

하였습니다.¹⁶⁾

이후 2019년과 2021년 채용에서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사무국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정관에 의해 공고는 일간신문을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¹⁷⁾ 누리집에 1~2주가량 게시하는 방식으로 채용공고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2019년과 2021년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 전형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공제회 이사나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다수를 차지했는바, 서울시교육청이나 안전 공제회 내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감사청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공익감사 청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제1항은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사·재판 중이거나 국가기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건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¹⁸⁾

16) 제39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청원 및 감사청구안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4289, 2023.6.8.)

17) 「정관」 제40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8)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청구대상) ①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제13조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수사,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3.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 동 감사청구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안전법」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익감사 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더욱이 감사청구안은 이사장 임명과 사무국장 채용 절차가 내부 규정 및 채용계획과 상이하게 전개되어 부실채용이 발생하였고, 안전공제회가 교육청 출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익감사 청구의 주요 요건인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감사청구안이 제기하고 있는 이사장 임명과 사무국장 채용이 발생했던 시기를 고려할 때 2018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사무국장의 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에¹⁹⁾ 따른 청구 기간을 도과하거나 같은 규정 제4조제2항에서 규정된 감사청구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에 대한 검토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자격 요건은 「학교안전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초 임원 구성 계획(안)에서 제시한 임원 구성(안)과 상이하게 임원 구성이 전개된 부분 역시 당초 계획에 명시된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통해 임원 선임이 이뤄진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추천서 작성 과정에서 임원 후보자가 개입되었다는 것 역시 공제가입자가 추천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공문을 통해 이를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어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역시

19)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청구기간)에 따라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제기할 수 없음.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방식이고, 심사위원 구성을 포함하여 채용시험 및 전형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교육감이 관여하지 않으며,

채용공고는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했으나 공고 방법을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관」을 개정 중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대외협력담당관-4289, 2023.6.8.)²⁰⁾

- 그러나 당초 임원 구성 계획(안)의 추진일정이나 임원 구성안을 계획 변경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준수하지 않은 점, 관계 법령에 이사장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감사청구안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사무국장 채용이 「인사규정」에서 열거된 특별채용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²¹⁾ 2018년 이전 사무국장 채용에서는 교육청이 추천한 인사가 채용되어 왔음을²²⁾ 고려할 때 안전공제회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채용 관련 사안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일간신문에 공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현행 정관을 위반하는 것인바,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 절차적

20) 제39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청원 및 감사청구안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4289, 2023.6.8.)

21) 인사규정은 특별채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1) 법령에 따른 고용 의무가 있거나 2) 공개경쟁에 의해 채용하기 곤란한 경우, 3) 특수 직무분야 자격이나 면허를 소진한 전문가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국장은 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 채용의무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채용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22)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추천(서울시교육청 총무과-14225, 2015.6.18.), 임용후보자 추천(서울시교육청 총무과-19006, 2017.6.14.) 등에 따르면 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 교육청이 임용후보자를 지속적으로 추천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흡결이 있었다고 볼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채용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칠 것입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이준석 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 2180-8264
----------	------------------	-------	------------------

관계법령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시행 2022.11.30.] [감사원 훈령 제878호, 2022.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감사청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감사원법」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 "공익"이란 주요 사업, 예산, 안전,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사회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말한다. 다만, 특정집단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청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8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다만,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 감사대상기관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3의2. 자체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자체감사기구'를 말함)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지방의회.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조(청구대상) ①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제13조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 수사,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이거나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다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이 공익 사항이 아닌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6.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감사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7. 「감사원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청구기간)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무처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무처리와 연관된 후속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7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공제회의 임원 등) ① 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제회의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①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

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③ 공제회의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23조(공제회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